정부합동감사결과

훈계요구·통보

제　　목 **중대교통사고 발생 운수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 등**

기 관 명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예산군

훈계대상자 ① 충청남도 천안시 ○○과 지방○○서기 ○○○

② 충청남도 천안시 ○○과 지방○○서기 ○○○

내　　용

위 관련자 중 지방○○서기 ○○○는 2016. 1. 16.부터 2017. 1. 10.까지, 지방○○서기 ○○○는 2016. 11. 7.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아 위반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하였다.

가. 여객자동차 중대교통사고 발생 운수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7]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노선폐지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및 법 제88조에 따른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그 징수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별표3] 제3호 바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1건의 교통사고로 6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상자 수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사업 일부정지[8], 감차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별표5] 표1 제2호 라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200만원 이하의 과징금[9]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천안시(○○과)에서는 2016. 4. 29. ○○○도로부터 천안시 ○○구 ○○0로 27에 있는 ○○관광㈜ 소속 버스(운전자: ○○○, 차량번호: ○○00바0000)가 2015. 10. 25. ○○고속도로 ○○○도 ○○군 ○○면 지점에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교통사고로 6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았으므로 사업 일부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서 지적되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7개월이 경과한 2017. 11. 21.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충청남도(○○○○○과)에서는 2014. 12. 29.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 ○○시 ○○○읍 ○○리 000에 있는 ㈜○○○투어 소속 버스(운전자: ○○○, 차

8) 중상자 6명 이상 9명 이하 : 사업 일부정지 60일, 중상자 10명 이상 19명 이하 : 사업 일부정지 120일, 중상자 20명 이상 29명 이하 : 3대 감차, 중상자 30명 이상 39명 이하 : 4대 감차, 중상자 40명 이상 : 5대 감차

9) 중상자 6명 이상 9명 이하 : 과징금 800만원, 중상자 10명 이상 19명 이하 : 1,200만원

량번호: ○○00바0000)가 2014. 10. 16. ○○고속도로 ○○방향 412Km 지점에서 안전거리확보 불이행(고속도로, 전용도로) 위반 교통사고로 7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았으므로, 통보받은 사실을 ㈜○○○투어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는 ○○○○○○시로 이첩하여야 했는데도 이첩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서 지적되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11개월이 경과한 2017. 11. 22. ○○○○○○시로 이송하였다.

[표1]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 내역

연번	사업자	사업자 주소	운전자	차량번호	사고일자(통보일자)	중대한 교통사고 통보내용	행정처분 관할청	비고(관련자)
1	○○관광(주)	천안시 ○○구 ○○0로 00	○○○	○○00바0000	2015.10.25.(2016.04.29.)	중상 17(안전운전 의무위반)	천안시	○○○
2	㈜○○○투어	세종특별자치시 ○○○읍 ○○리 000	○○○	○○00바0000	2014.10.16.(2014.12.29.)	중상 7(안전거리확보 불이행)	본청(세종시 이첩 미이행)	○○○

※ 충청남도(○○○○과) 제출자료 재구성

나. 화물자동차 중대교통사고 발생 운수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별표1]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10]은 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별표1] 제12호 가목에 따르면 1건의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상자 수에 따라 위반차량 운행정지[11], 감차[12] 처분을 하도록 되

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처분 및 감차조치 명령 업무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11) 중상자(2명이하: 운행정지 5일, 3명~4명: 운행정지 15일, 5명~9명: 운행정지 30일)
사망자(2명이하: 운행정지 30일, 3명~4명: 운행정지 60일)

12) 중상자(10명 이상: 1대 감차), 사망자(5명~9명: 1대 감차, 10명 이상: 2대 감차)

어 있다.

그런데 천안시(○○과)에서는 2016. 6. 29. ○○○도로부터 ○○○도 ○○시 ○○구 ○○읍 ○○리 000-0에 있는 ○○○○협회 소속 화물자동차(운전자 ○○○, 차량번호: ○○00바0000)가 2016. 5. 2. ○○○도 ○○시 ○○면 ○○리 ○○화학 앞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중상자 1명이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을 통보받고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표2]와 같이 충청남도 및 천안시 등 4개 시·군에서는 교통안전공단 및 충청남도로부터 12건의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통보를 받고도 최대 2년 10개월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서 지적되자 2017. 11. 20. 행정처분 사전 통지(5건, 연번 1번~5번)를 하였고 2017. 11. 22. 행정처분 소관 관청으로 이송(2건, 연번 11번~12번) 하였다.

[표2]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 내역

연번	사업자 [통보받은 기관]	사업자 주소	운전자	차량 번호	사고일자 (통보일자)	중대한 교통사고 통보내용	행정처분 소관청	비고 (관련자)
1	○○○○ 협회 [천안시]	천안시 ○○구 ○○리 000-0	○○○	○○00 바0000	2016.05.02. (2016.06.29.)	중상 1 (중앙선 침범)	천안시	2017.11.20. 정처분 사정통지 (○○○)
2	○○○○ 협회 [천안시]	천안시 ○○구 ○○리 000-0	○○○	○○00 바0000	2015.7.13. (2015.09.01.)	중상1 (신호 또는 지시위반)	천안시	〃 (○○○)
3	○○○○ 협회 [천안시]	천안시 ○○구 ○○0길 00	○○○	○○00 사0000	2016.12.01. (2017.02.28.)	중상 1 (속도위반)	천안시	〃 (○○○)
4	○○○○ 협회 [천안시]	천안시 ○○구 ○○로 00	○○○	○○00 아0000	2014.10.04. (2015.01.26.)	중상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천안시	〃 (○○○)
5	○○○○ 협회 [천안시]	천안시 ○○구 ○○리 000-00	○○○	○○00 바0000	2016.05.13. (2016.06.29.)	중상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천안시	2017.11.20. (○○○)

연번	사업자 [통보받은 기관]	사업자 주소	운전자	차량 번호	사고일자 (통보일자)	중대한 교통사고 통보내용	행정처분 소관청	비고 (관련자)
6	○○○○ 협회 [천안시]	천안시 ○○구 ○○로 000-00	○○○	○○00 바0000	2015.9.8. (2016.04.05.)	중상 1 (일시정지 위반)	천안시	행정처분 사전통지 준비중[13] (○○○)
7	○○○○ 협회 [천안시]	천안시 ○○구 ○○○○○0 길	○○○	○○00 바0000	2016.6.29. (2016.12.30.)	중상 1 (통행구분 위반)	천안시	행정처분 사전통지 준비중[14] (○○○)
8	○○○○ 협회 [보령시]	보령시 ○○면 ○○리 0000-0	○○○	○○00 바0000	2015. 5. 30. (2015.08.03.)	중상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보령시	(○○○)
9	○○○○ 협회 [예산군]	예산군 ○○읍 ○○0길 00	○○○	○○00 바0000	2015.2.4. (2015.05.26.)	사망 1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위반)	예산군	(○○○)
10	○○○○ 협회 [예산군]	예산군 ○○면 ○○○로 000	○○○	○○00 바0000	2016.3.23. (2016.06.29.)	중상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예산군	(○○○)
11	○○○○ 협회 [공주시]	공주시 ○○동 000-0	○○○	○○00 바0000	2015.08.07. (2015.09.01.)	중상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공주시	2017.11.24. 천안시 이송 (○○○)
12	㈜○○○○(현, ㈜○○) [충청남도]	경주시 ○○읍 ○○로 0000	○○○	○○00 바0000	2016.11.03. (2016.12.29.)	중상 1 (중앙선 침범)	충청남도	2017.11.22. 경주시 이송 (○○○)

※ 충청남도(○○○○과)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천안시장은

[훈계] 위 사람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지사, 천안시장, 공주시장, 보령시장, 예산군수는

[통보]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관광㈜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고, ○○○○협회 소속 ○○○ 등 11명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각각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3) ○○○의 ○○00바0000은 2016. 11. 14. 청주시 ○○○에게 양도・양수되었음.(변경된 차량번호 ○○00자0000)
14) ○○○의 ○○00바0000은 2016. 10. 5. ○○○에게 양도・양수되었음